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1. 28 선고 2023가단5239698 판결 [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구상금
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11. 21.

판 결 선 고 2023. 11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11. 6.부터 2023. 9. 1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장원정

별지